

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2007 -제62호 |
|----------|------------|

제 출 일 자 : 2007. 8. 30.
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우리시 도서지역주민에게 의료 수혜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수보건진료소를 신설 운영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신수보건진료소 신설에 따른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비함
(안 별표 1)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감사담당관실
- 라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 - 2)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 - 3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1]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중 “제7조 관련”을“제8조 관련”으로 하고, 서포비토보건진료소 다음에 신수 보건진료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|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신수보건진료소 | 사천시 신수동 227-8번지 | 신수동 일원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《 현 행 》

[별표 1]

보건소·보건지소·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(제7조 관련)

| 명 칭 | 위 치 | 관 할 구 역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사천시보건소 |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26번지 | 사천시 일원 |
| 보건위생과 | 사천시 동금동 337-2번지 | 동 일원 |
| 정동면보건지소 | 정동면 대곡리 307-4번지 | 정동면 일원 |
| 사남면보건지소 | 사남면 화전리 1316-3번지 | 사남면 일원 |
| 용현면보건지소 | 용현면 송지리 288-1번지 | 용현면 일원 |
| 곤양면보건지소 | 곤양면 성내리 194-1번지 | 곤양면 일원 |
| 곤명면보건지소 | 곤명면 정곡리 860-8번지 | 곤명면 일원 |
| 서포면보건지소 | 서포면 구평리 886-11번지 | 서포면 일원 |
| 사천북사동 보건진료소 | 사천읍 두량리 210-4번지 | 두량 1·2·3·5·6리 장전 1·2리, 금곡리, 구암 1·2리 |
| 정동소곡 보건진료소 | 정동면 소곡리 400-14번지 | 만마, 객방, 학촌, 소곡, 가곡 감곡, 복상, 대산 |
| 사남가천 보건진료소 | 사남면 가천리 82-5번지 | 우천, 능화, 가천, 종천, 소산, 연천, 사촌, 송암, 계양, 진분계, 대산, 구룡, 화전, 예의 |
| 용현통양 보건진료소 | 용현면 통양리 94-2번지 | 통양, 연호, 선진, 신촌, 종포, 신복, 평기, 신기 |
| 축동반룡 보건진료소 | 축동면 반룡리 228-2번지 | 반룡, 신촌, 관동, 용산, 용수, 상탑, 중탑, 하탑, 가산, 구호, 예동, 사다 |
| 곤양검정 보건진료소 | 곤양면 검정리 105-3번지 | 홍사, 검정, 가화, 동천, 묵실, 와티, 안도, 점복개 |
| 곤양분촌 보건진료소 | 곤양면 환덕리 986-5번지 | 분촌, 환덕, 목단, 한월, 고동포 석문, 제민 |
| 곤명봉계 보건진료소 | 곤명면 봉계리 152번지 | 오사, 추동, 용산, 조장, 원전, 오저, 초량, 신산, 성방 |
| 곤명은사보건진료소 | 곤명면 은사리 170-6번지 | 삼정, 은사, 옥동, 마곡, 송림 |
| 서포금진보건진료소 | 서포면 금진리 275-5번지 | 금진, 내구, 후포, 신흥, 굴포, 서구, 동구, 남구 |
| 서포비토보건진료소 | 서포면 비토리 151-8번지 | 비토, 선창, 염전, 아포 |

《개정안》

[별표 1]

보건소·보건지소·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(제8조 관련)

| 명 칭 | 위 치 | 관 할 구 역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사천시보건소 |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26번지 | 사천시 일원 |
| 보건위생과 | 사천시 동금동 337-2번지 | 동 일원 |
| 정동면보건지소 | 정동면 대곡리 307-4번지 | 정동면 일원 |
| 사남면보건지소 | 사남면 화전리 1316-3번지 | 사남면 일원 |
| 용현면보건지소 | 용현면 송지리 288-1번지 | 용현면 일원 |
| 곤양면보건지소 | 곤양면 성내리 194-1번지 | 곤양면 일원 |
| 곤명면보건지소 | 곤명면 정곡리 860-8번지 | 곤명면 일원 |
| 서포면보건지소 | 서포면 구평리 886-11번지 | 서포면 일원 |
| 사천북사동 보건진료소 | 사천읍 두량리 210-4번지 | 두량 1·2·3·5·6리 장전 1·2리, 금곡리, 구암 1·2리 |
| 정동소곡 보건진료소 | 정동면 소곡리 400-14번지 | 만마, 객방, 학촌, 소곡, 가곡 감곡, 복상, 대산 |
| 사남가천 보건진료소 | 사남면 가천리 82-5번지 | 우천, 능화, 가천, 종천, 소산, 연천, 사촌, 송암, 계양, 진분계, 대산, 구룡, 화전, 예의 |
| 용현통양 보건진료소 | 용현면 통양리 94-2번지 | 통양, 연호, 선진, 신촌, 종포, 신복, 평기, 신기 |
| 축동반룡 보건진료소 | 축동면 반룡리 228-2번지 | 반룡, 신촌, 관동, 용산, 용수, 상탑, 중탑, 하탑, 가산, 구호, 예동, 사다 |
| 곤양검정 보건진료소 | 곤양면 검정리 105-3번지 | 홍사, 검정, 가화, 동천, 묵실, 와티, 안도, 점복개 |
| 곤양본촌 보건진료소 | 곤양면 환덕리 986-5번지 | 본촌, 환덕, 목단, 한월, 고동포 석문, 제민 |
| 곤명봉계 보건진료소 | 곤명면 봉계리 152번지 | 오사, 추동, 용산, 조장, 원전, 오저, 초량, 신산, 성방 |
| 곤명은사보건진료소 | 곤명면 은사리 170-6번지 | 삼정, 은사, 옥동, 마곡, 송림 |
| 서포금진보건진료소 | 서포면 금진리 275-5번지 | 금진, 내구, 후포, 신흥, 굴포, 서구, 동구, 남구 |
| 서포비토보건진료소 | 서포면 비토리 151-8번지 | 비토, 선창, 염전, 아포 |
| 신수보건진료소 | 사천시 신수동 227-8번지 | 신수동 일원 |

관 계 법 령 발 취

<지방자치법>

제102조 (행정기구)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,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·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.

<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>

제12조의2 (보건환경연구원 등) ①시·도지사소속하에 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, 그 하부조직으로 부와 과(과)를 둘 수 있다.

②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과 부장·과장은 지방보건연구원·지방환경연구원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원으로 보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보직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지방수의 직렬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<개정 1999.9.9>

③「지역보건법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보건소장은 4급 또는 5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05.2.11>

[본조신설 1998.8.31]

<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>

제15조 (보건진료소의 설치·운영) ①시장 (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, 읍·면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만한다)·군수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시·구의 관할구역안의 도서지역에는 당해 시장·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군지역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의하여 시 또는 구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.<改正 1994·12·22, 1997·12·13>

②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③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改正 1997·12·13>